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32호 2023. 6. 21.(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55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720호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3

○ 정선군 공고 제2023-727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운동장 : 골프연습장) 공사 완료 공고……9

○ 정선군 공고 제2023-729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철도, 광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3-732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

○ 정선군 공고 제2023-746호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3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55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261호(2020. 11. 20.)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나. 명 칭: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신설사업(통합정수장)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table>
<tr><th rowspan="2">시설명</th><th colspan="2">군계획시설 결정</th><th>실시계획 인가</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세부시설명</th><th>규 모</th><th>금회시행</th></tr>
<tr><td>유통·공급시설</td><td>수도공급설비
(신동통합정수장)</td><td>A=11,755㎡</td><td>□ 수도공급설비 A=11,755㎡(구역면적)
□ 시설용량 Q=3,500㎥/일
▪유입유량계실 26.98㎡ ▪착수정 92.43㎡
▪혼화응집침전지 210.40㎡ ▪급속여과지 265.12㎡
▪정수지 및 송수펌프실 340.40㎡ ▪가압장 25.76㎡
▪슬러지처리시설 160.00㎡ ▪농축조,분배조 59.63㎡
▪건축계획
<table><tr><td></td><td colspan="2"></td></tr><tr><td></td><td></td><td></td></tr><tr><td>여과지동</td><td>· 397.40㎡(515.09㎡)</td><td>· 364.73㎡(507.22㎡)</td></tr><tr><td>정수지 및 송수펌프동</td><td>· 161.97㎡(273.81㎡)</td><td>· 137.6㎡(263.73㎡)</td></tr><tr><td>약품투입동</td><td>· 193.96㎡(171.95㎡)</td><td>· 166.08㎡(166.08㎡)</td></tr><tr><td>농축조동</td><td>· 9.84㎡(44.07㎡)</td><td>· 8.58㎡(42.81㎡)</td></tr><tr><td>배출수지동</td><td></td><td>· 14.56㎡(30.8㎡)</td></tr></table></td><td></td></tr>
</table>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나. 주 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로 1047)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m^2)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신동읍 고성리	139	대	780	780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신동읍 고성리	140-7	도	172	6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신동읍 고성리	170-8	전	1,530	1,528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신동읍 고성리	140-12	전	4,135	1,39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신동읍 고성리	144-2	도	812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신동읍 고성리	145-1	전	2,440	2,43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신동읍 고성리	146	대	254	254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신동읍 고성리	147	대	225	225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신동읍 고성리	148-1	도	46	1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신동읍 고성리	148-3	전	4,857	4,857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신동읍 고성리	164-1	도	6,845	274	-	국(국토교통부)	-	-	-
계				22,096	11,755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720호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을 규정함(안 제5조)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예방대책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6. 9. ~ 6. 2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 : 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24),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

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3.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수기업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727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운동장 : 골프연습장) 공사 완료 공고

강원도 고시 제2008-218호(2008. 8. 8.)로 최초 결정되고, 정선군 고시 제2022-2호(2022. 1. 7.)로 변경 결정된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운동장 : 골프연습장)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운동장 :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 시행	
종합운동장	운동장	177,698.4	□ 골프연습장 7,794㎡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문화체육과)
나.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2. 5. 6.
나. 준공일 : 2023. 5. 30.

정선군 공고 제2023-729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철도, 광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철도,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철도, 광장)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

2.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철도, 광장)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철도, 광장) 결정(변경)(안) 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행정복지센터

6. 공람기간 : 2023. 6. 16. ~ 2023. 6. 30.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732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위임사항 규칙 제정.

2.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농막) 지방·광역상수도 공급 제한(안 제2조)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 급수공사 범위 규정(안 제4조)
-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접속 제한

❍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안 제14조)
- 정선군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
1. 단독주택의 경우 : 50만원 이하
2. 공동주택의 경우 :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 급수설비 개량지원 대상 순위(안 제14조)
1.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3. 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6. 13. ~ 2023. 7. 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연 락 처 : 전화(033-560-2522), 팩스(033-560-2940)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상하수도사업소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tostay@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 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폐전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중지·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중지·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중지·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중지·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제13조(급수장치의 임시 사용)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를 임시로 설치하여 급수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2에 따른 일반용 누진요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수장치의 임시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14조(급수설비의 개량지원 등) ①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정선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경우: 50만원 이하(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별 3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

④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입금통장 사본
3. 노후급수관 증명자료(수질검사성적서)

제15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급수시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발주한 유수율 제고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한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급수공사 신청서

급수전위치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용 도				전 화 번 호 (H.P)	
건물 현황		건축번호	연월일	설치계량기 (구 경)	m/m 전
허가	준공			공사 구분	신설, 개조, 증설, 위치변경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사용관로를 상수도급수관로와 교차접속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 공사비 전부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고,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 이전 또는 대지경계(담장) 옥외시설 전부를 정선군에 기부채납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2.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 건축신고·허가서 사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 건 명 :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연번	내 용	비고	
1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거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며, 향후 본 급수설비를 이용하여 분기 시 별도의 동의없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용	해당 없음
2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급수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되,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유 토지인 경우 공유자 전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인 토지를 포함하여 수도관이 매설되는 모든 토지의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미첨부시 급수공사신청 불가)**	수용	해당 없음

[급수공사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날인)
연락처 :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토지.건물 사용승낙서

급수전 위치				
급수공사 신청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토지소재지	지 목	면적 (㎡)	편입예정 면적(㎡)	비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에 급수장치 설치 및 급수관 분기 인용을 승낙하고, 토지 내의 급수관 이설 시에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이설할 것을 약속하며 급수공사를 승낙합니다.

승낙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대장

연번	건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승인일자	주소	성명	연락처	납입액					영수증	계량기 규격(m/m)						관로(M)					계량기번호	공무소	준공일	시공요청일자	구경	지급품의
								총계	공사금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관급자재		13	20	25	40	50	기타	16	20	25	40~50	50이상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협 의 서

■ 건 명 :
■ 협의일시 :
■ 협의장소 :
■ 참 석 자(등록부)

소 속	성 명	연 락 처	서 명

■ 협의내용(상호확인)

협 의 내 용	결 정 사 항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확 인 서

공 사 위 치		**접수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계량기구경		**계량기 번호**	
도 급 액			
시공지시일	20 년 월 일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예정일	20 년 월 일	**준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확인일	20 년 월 일	**참 고**	사진(전, 중, 후) 첨부

위 공사에 대하여 검사한바 설계내역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 관부설 심도는 설계내역 이상으로 시공되었음

○ 부속품은 규정된 KS자재를 사용되었음

○ 공사시행으로 파손된 도로는 원상복구 되었음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수용가(입회자) (인)

시공 회사: (인)

준공확인자: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납입 통지서

주소	
성명	
계량기대금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관급자재	-
순 공사비	-
합 계	-

상기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20 년 월 일까지

납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군 금고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상하수도사업소(관리)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팀) 보관용

영 수 증

주소	0
성명	0
계량기대금	-
원인자부담금	-
설계수수료	-
준공검사수수료	-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순 공사비	-
합 계	-

위 금액을 상수도급수공사비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

수 용 가 보 관 용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급수 (개전.중지.폐전) 신청서

수용가 번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사 유	건물개조, 건물철거, 기타 ( )				
계량기구경	m/m	계 기 번 호		철거지침	㎥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증 사본 2. 최종납입 영수증 사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급수(개전.중지.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급수장치 개전·중지·폐전 관리대장

연번	수용가 번호	지침	성명	주 소	연락처	구경	계기 번호	구분	철거 일자	개전 일자	비고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시 험 료	원정				
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	사 용 료	금월사용량	사 용 료	비 고	

위와 같이 수도사용량이 증감되어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

업 종 별			수용가 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주 소					
계량기구경	m/m	계량기번호		지침량	
고 장 내 용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도계량기 고장신고를 하오니 수리(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관 인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수리(교체)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주택 소유자 정보	성 명		건축물 정보	소 재 지	
	주 소			주택형태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휴대전화			준공년도	
	집 전 화			주택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기타사항 (수급자 등)			공사구분	교체, 세척 등
개량내용 및 공사방법					
확인사항	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감독 하겠으며, 공사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리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소유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정 선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① 공사비견적서 또는 계약서 (500만원 이상은 설계서 첨부) 사본 1부 ②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노후급수관 증명자료 : 수질검사성적서 ※ 일괄신청시 세대별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부정급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위치				
신고내용				
신 고 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계좌번호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정급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관계법령 발췌】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⑦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들어있는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선군 공고 제2023-746호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관리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6. 14. ~ 2023. 7. 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관광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관광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79), 팩스(033-560-2593)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문화예술회관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 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 지질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전시관의 위치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카르스트 지형·지질에 대한 정보제공
2.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리·전시·연구
3.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개방
4. 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7일 전까지 조정되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정선군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전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흡연·음주하거나 음식물을 반입 또는 섭취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내·외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7. 동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는 제외한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전시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1.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
2.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운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발전에 관한 연구·건의
2.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
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교류 촉진 및 전시관 홍보
4.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

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8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위촉해야 한다.

⑦ 관장 및 직원의 수당·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선군이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 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전시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전시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